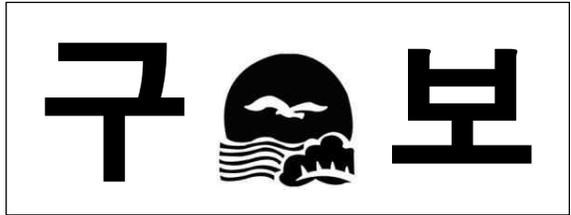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410 호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473호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475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3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473호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식품 영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 나. 영업장소 지정신청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불편 사항을 경감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개정 및 신설 (안 제2조)
 -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신설]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나. 영업장소 지정신청 방법 및 관련서식 정비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을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장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p> <p>1. ~ 3. (생 략)</p> <p>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u>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u>의 시설 또는 장소</p> <p><신 설></p> <p>② (생 략)</p>	<p>제2조(영업장소) ①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u> -----</p> <p>5.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 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 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u>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② (생 략)</p> <p><신 설></p>	<p>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u>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시설 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장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u></p>

규 제 영 향 분 석 서

I. 분석대상 규제개요

기 본 정 보	규제사무명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					
	규제조문	○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근거(위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별표 15의2					
소 관 부 서 및 작 성 자	○ 도시개발국 위생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정기란				
	○ 도시개발국 위생과 위생관리팀장		지방보건주사 방유순				
	○ 도시개발국 위생과 위생관리팀		지방보건주사보 황중옥				
구 분	신설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행정적규제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자						
현 행 규 제 및 신설(강화) 규제 내용	현행 규제 내용			신설(강화) 규제 내용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음식 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지 정						
규 제 존 속 기 한	○ 해당 조문 존속 시까지 ○ 미설정 사유 : 상위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가. 배경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정확한 영업 신고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식품영업 활성화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영업의 장소 등이 다양화됨에 따라 영업신고에 대한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신고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여 영업자 등의 불편사항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연번	검토 내용	검토 결과
1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부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달성 가능 여부	부
3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부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에 의하여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 별표 15의2 제9호에는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의 경우 ‘해당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는 ①‘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에 더하여 ②‘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까지 유효성의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하려 함
- 아울러 영업장소의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그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영업장소에 대한 지정 여부를 통보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 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영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 관리수준 향상에 기여

4. 기타

가. 용어설명

- 음식판매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나.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475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옥외영업 정의, 적용대상, 영업시간(제1조~제4조)
- 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제5조~제6조)
- 다. 옥외조리 가능지역(제7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4년 4월 4일(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과(위생관리팀)
- ▷ 전 화 : 032-760-7347 (FAX : 032-760-646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에 설치한接客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업시간) 옥외영업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업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기준

1. 옥외영업 시설은 식품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3. 난간 아래로 식기류 등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기타 적재물 등의 비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 시설 또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옥외영업장이 대지 안의 외부공간 또는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 등과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옥외영업장에 스피커 등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통로에 선·줄 등으로 표시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등을 설치·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옥외조리에 따른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옥외 소화기는 눈·비·습기로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옥외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식탁, 의자, 차양(awning), 파라솔 등)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영업장 신고면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옥외영업장에는 조리나 세척 등을 위한 조리장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옥외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화기는 휴대용 부탄가스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 레인지에 한하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1.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 위치만을 옥외영업장소로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 등을 취급하는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여야 하며,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옥내 영업장으로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 경계면 인근에서 손님 등이 흡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면적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옥외조리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가. 배경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여 식품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시설 및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당위성 대두
-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 예시”가 포함되도록 개정된 「202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제작 배포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연번	검토 내용	검토 결과
1	기존 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부
2	규제 외 다른 방법에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부
3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	부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로 인하여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영향분석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소 면적 변경 시,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사항 변경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 도목 :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하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부록8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
 - II. 영업(변경) 신고 절차 2.제출서류 검토 라목 : 필요시 옥외 영업시간의 제한 등 주거 안녕 침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권고
 - [참고3]옥외영업 영업자 준수 수칙, [참고4]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범위 제시
 - [참고5]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 예시 : 민원발생 우려 등 필요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관리 방안 제시
- 우리 구 조례상의 관련 기준 및 제한사항은 해당 지침에 기반하고 있으며, 타 기초자치단체 조례들과 유사한 수준임

나.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 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관광특구 등 특정지역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옥외영업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내 지역 전반에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옥외조리 허용범위 등 옥외영업에 대한 영업자와 이용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기타

가. 용어설명

-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제2조제1호)
 - 옥외영업 :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에 설치한 접객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제2조제2호)
 - 옥외조리 :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 (제2조제3호)

나.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식품위생법」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